

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(제45조제1항 관련)

1. 지역별 가중치

가. I 지역(상수원보호구역): 3

나. II 지역(수변구역): 2

다. III 지역(댐주변지역, I 지역 및 II 지역은 제외한다): 1

2.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

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=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$50/100 \times (\text{해당 지역의 면적} \times \text{해당 지역의 가중치}) \div \{(\text{I 지역의 면적} \times 3) + (\text{II 지역의 면적} \times 2) + (\text{III 지역의 면적} \times 1)\}$

비고: "해당 지역"이란 I 지역, II 지역, I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3.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

가. I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9를 곱한 금액

나. II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7을 곱한 금액

다. III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4를 곱한 금액

4. 배분액 산정방법

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